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문 1】

김상훈[주민등록번호: 701104-1122333,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전화번호: 010-1234-7777, 전자우편: ksh@kmail.com]은 2019. 9. 10.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별첨 서류를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적합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30점)

< 다 음 >

-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하용주의 부탁을 받고 2017. 1. 1. 하용주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저와 하용주는 오랜 기간 함께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였던 터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용주에게 다른 담보는 요구하지 않고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저와 하용주가 2017. 1. 1. 대여 당시 합의한 내용은 차용증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하고, ② 이자는 월 0.5%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 저는 2017. 1. 1. 제 명의의 진민은행 계좌에서 하용주 명의의 유상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용주도 저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 하용주는 2017. 1월부터 매달 말일에 꼬박꼬박 2억 원에 대한 이자 1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용주는 2017. 12. 31.에도 12월분 이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자가 밀린 적도 없고, 하용주가 새로 빌리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월 1.5%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저는 하용주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2018. 1. 1. 하용주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하용주도 저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위 차용증에는 ①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하고, ② 이자는 월 1.5%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저와 하용주가 합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 그런데 하용주는 기존 2억 원 외에 위와 같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간 후에 저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위 각 대여금에 대한 2018년 1월분부터의 이자를 입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이에 불안해진 저는 2018. 3. 20. 하용주에게 위 각 대여금의 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하용주는 2018. 3. 27. 자신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하용주는 그 이후로도 저에게 한 푼도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2018. 12.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9,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위 9,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이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 저와 하용주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거나, 저나 하용주가 이를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후 현재까지 하용주가 저에게 지급한 돈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용주는 2018. 12. 31. 저에게 9,000만 원을 갚았는데, 위 날짜를 기준으로 제가 하용주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액은 모두 3억 3,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2017. 1. 1.자 대여금 원금 2억 원, ② 위 2억 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0.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200만 원, ③ 2018. 1. 1.자 대여금 원금 1억 원, ④ 위 1억 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800만 원의 합계액입니다.
- 따라서 2018. 12. 31.을 기준으로 위 3억 3,000만 원에서 하용주가 변제한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변제충당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 취지에 맞게 소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 계 속 -

- 한편, 2017. 1. 1.자 대여금 2억 원의 지연손해금율은 월 0.5%이고, 2018. 1. 1.자 대여금 1억 원의 지연손해금율은 월 1.5%로 서로 차이가 나니,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청구취지 제1항은 위 2017. 1. 1.자 대여금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취지 제2항은 위 2018. 1. 1.자 대여금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나누어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율의 산정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유의사항>

1. 2017. 1. 1.자 대여금에 관한 청구는 청구취지 제1항에, 2018. 1. 1.자 대여금에 관한 청구는 청구취지 제2항에 반드시 나누어 기재하십시오.
2. 하용주가 9,000만 원을 변제한 날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변제충당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19. 1. 1.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하십시오(즉 청구취지 제1, 2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의 형식을 취하십시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적용하십시오. 2019. 6. 1. 이후에 제기된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경우 위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4.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5. 별첨 서류들과 김상훈의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김상훈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원고가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소장 작성일은 2019. 9. 20.로 할 것).
6. 김상훈이 언급한 사항 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7.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별첨 서류들을 참조하여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도 소장에 함께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8.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납부할 ‘인지액’을 그 각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십시오.
9.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번 등은 모두 가공의 것이고, 별첨 서류들은 모두 시험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차용증 등에 날인된 부분은 모두 명의자의 진정한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봄).

차 용 증

一. 금 이억 원(₩200,000,000) 정

채무자는 금일 귀하로부터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고
약정대로 변제하겠습니다.

1. 변제기 : 2018. 12. 31.

1. 이자 : 월 0.5%(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

2017. 1. 1.

채무자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전화번호 : 010-4321-9876

김상훈 귀하

이체확인증

처리일시	2017. 1. 1. 14:02:56
이체결과	정상
출금/입금내역	
출금계좌번호	123-456-7890
내 통장 표시내용	하용주 차용금
수수료	0원
입금은행	유상은행
입금계좌번호	098-765-4321
받는 분	하용주
이체금액	200,000,000원
받는 분 통장 표시내용	김상훈 대여금

* 이상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체확인증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 (주) 진민은행



차 용 증

一. 금 일억 원(₩100,000,000) 정

채무자는 금일 귀하로부터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고
약정대로 변제하겠습니다.

1. 변제기 : 2018. 12. 31.

1. 이자 : 월 1.5%(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자를 그달 말일에 후납)

2018. 1. 1.

채무자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전화번호 : 010-4321-9876

김상훈 귀하

이체확인증

처리일시	2018. 1. 1. 15:07:16
이체결과	정상
출금/입금내역	
출금계좌번호	123-456-7890
내 통장 표시내용	하용주 2차 차용금
수수료	0원
입금은행	유상은행
입금계좌번호	098-765-4321
받는 분	하용주
이체금액	100,000,000원
받는 분 통장 표시내용	김상훈 2차 대여금

* 이상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체확인증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 (주) 진민은행



변제 요청서

수신 :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발신 : 김상훈 (701104-11223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 본인은 2017년 1월 1일 귀하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년 12월 31일, 이자 월 0.5%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귀하는 위 2억 원에 대하여 2017년까지는 매월 말일에 꼬박꼬박 약속한 이자를 입금해 주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이자를 전혀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한편, 본인은 2018년 1월 1일에도 귀하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년 12월 31일, 이자 월 1.5%로 정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2018년 1월부터 단 한 번의 이자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저는 귀하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귀하에게 함께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이자가 입금되지 않으니 불안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부디 밀린 이자를 신속하게 입금하시고, 원금의 변제기인 올해 연말에 원금도 이상 없이 반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20일

발신인 김 상 훈



본 우편물은 2018-03-20

제5033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초우체국장



변제 요청서에 대한 답변

수신 : 김상훈 (701104-11223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발신 :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1. 김상훈 사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1월 1일과 2018년 1월 1일 등 2차례에 걸쳐 저에게 함께 3억 원을 빌려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그럭저럭 버텨 오던 저의 경제 사정이 2018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이자를 입금하려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는 이자를 전혀 입금해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밀린 이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연한 이야기지만 연말까지는 약속한 대로 빌린 원금 3억 원도 모두 변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 밀린 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27일

발신인 하 용 주



본 우편물은 2018-03-27

제5327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남우체국장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기간 : 2018/12/31 - 2018/12/31

입출금 계좌번호 : 123-456-7890

계좌명의인 : 김상훈

거래일자	거래시각	거래종류	거래내역	거래금액	거래후잔액	상대은행	상대계좌 (의뢰인)
2018/12/31	11:54	입금	타행입금	90,000,000	207,865,430	유상은행	하용주